

증평군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[2003. 12. 15 조례 제102호]

개정 2005. 5. 9 조례 제 148호
일부개정 2012. 2. 24 조례 제 412호
(증평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)
일부개정 2013. 11. 8 조례 제 506호
(증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)
일부개정 2018. 12. 28 조례 제 845호
(증평군 조례 인용법령 등 일괄정비 조례)
일부개정 2022. 12. 29 조례 제1068호
(위원회 규정 정비를 위한 「증평군립도서관
운영 조례」 등 일부개정조례)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국민건강증진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증평군건강생활실천협의회(이하 “협의회”라 한다)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구성)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,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위원 10인 이내로 구성한다.

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, 부위원장은 보건소장으로 한다.

③ 위원은 지역사회의 주민, 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.

제3조(기능)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한다.

1. 국민건강증진사업의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
2. 삭제 <2005. 5. 9>
3. 국민건강생활실천운동 전개
4. 기타 국민건강증진사업에관한 사항

제4조(임기) ①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보직기간으로 하며,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
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.

제5조(위원장의 직무 등)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소집하고, 회무를 총괄한다.

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, 위원장의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증평군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

제6조(회의운영) 회의는 제3조의 협의사항이 발생하거나 재적위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.

제7조(의견청취 등) 위원장은 협의회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이나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련자료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

제8조(의결정족수) 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9조(보고) 위원장은 협의회에서 심의 결정된 사항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제10조(간사) ① 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둔다.

② 간사는 건강증진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하는 공무원이 된다. <개정 2005. 5. 9, 2013. 11. 8, 2018. 12. 28>

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협의회 사무를 담당한다.

제11조 삭제 <2022. 12. 29>

제12조(시행규칙)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(2005. 5. 9 조례 제148호)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(2012. 2. 24 조례 제412호, 증평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)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및 제3조 생략

제4조(다른 조례의 개정) ① 부터 ⑤4 까지 생략

⑤5 증평군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1조 중 “「증평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」”를 “「증평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”로 한다.

⑤⑥ 부터 ⑥⑩ 까지 생략

부칙(2013. 11. 8 조례 제506호, 증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)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조례의 개정) ① 및 ② 생략

③ 증평군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조제2항 중 “건강증진담당주사로”를 “건강증진팀장으로”로 한다.

④ 부터 ④⑤ 까지 생략

부칙(2018. 12. 28 조례 제845호, 증평군 조례 인용법령 등 일괄정비 조례)

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(2022. 12. 29 조례 제1068호, 위원회 규정 정비를 위한 「증평군립도서관
운영 조례」 등 일부개정조례)

이 조례는 2022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.